

2010. 1. 14.

수 신 : 제천시의회 의장

제 목 : 제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제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16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 임 1. 발의의원 서명서 1부.

2. 제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발의자 : 이정임 의원 (서명 )

외 4인

제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발의서명서

의원성명	서명 또는 날인	비 고
이정일	이정일	
조덕희	조덕희	
양순경	양순경	
이정일	-3-	
이정일	이정일	

# 제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407
------	------

발의연월일 : 2010. 1. 14.  
발 의 자 : 이정임 의원외 4인

## 1. 제안이유

-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7.8.3제정)됨에 따라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 해결과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는 등 새로운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 ※ 효사상은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임과 동시에 미래에도 유지발전시켜야 할 덕목으로 시대와 세대를 초월하는 통시적(通時的), 종교·종파를 초월하는 통교적(通教的), 어떤 이념도 초월하는 통념적(通念的) 가치를 지님

## 2. 주요골자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 시장의 효행장려 시행계획 수립책무 및 그 내용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효행교육 장려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효행장려를 위하여 효행우수자를 표창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한 효행장려 지원센터 설치 및 센터업무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7조 내지 제8조)
- 효행장려 지원사업 수행 법인, 단체에 대한 사업평가 규정을 둠(안 제9조)
- 효행장려 사업 수행 센터, 법인, 단체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둠(안 제10조)

### 3. 의견수렴 및 검토결과

- 방 법 : 제천시의회 홈페이지 및 제천시 홈페이지개재, 관련부서 검토
  - 기 간 : 2009. 12. 23 ~ 2010. 1. 12(20일간)
  - 의견제출
    - 제출자 : 제천시장(사회복지과)
    - 내용 및 검토결과
- 1)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효문화 진흥원의설치)에 규정 되어 있으며 제14조(유사명칭 사용금지)이 법에 따른 효문화진흥원이 아니면 효문화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과태료 300만원)로 규정되어 있어 조례 제7조(효행장려 · 지원센터설치 시) 상위법 저촉 여부 검토가 필요

**검토결과 :**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살펴보면

-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 광주·대전·대구에서는 “효문화지원센터”로, 인천은 “효행장려·지원센터”로 사용
  -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 부천·청주시 등에서는 “효문화지원센터”로 사용하고 있는바, 금회 제정안에서 사용코자 하는 “효행장려·지원센터”는『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고 있는 “효문화 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사용금지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2) 추가 예산 지원필요 (지원센터설치시 사무실운영, 인건비, 사업비등 추가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검토결과 :** 초기에는 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나 향교 등 유관 단체등과 연계하여 비예산 또는 최소예산으로 시행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무실운영, 인건비 등 예산지원은 집행기관의 정책결정사항으로 판단됨.

### 4. 관계법령

-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붙 임 : 제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 제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0. . . 조례 제 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학가족화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효문화 정착을 통한 조화롭고 살기 좋은 사회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수립하는 효행장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근거

로 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효행장려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효행장려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효행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
  3. 효행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
  4. 효행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효행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6. 그 밖에 효행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시책
-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천시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시장은 교육장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표창) 시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7조(효행장려·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장려·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설치요건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효행 장려를 위한 연구조사,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2. 효행 장려를 위한 기반구축 및 정보제공
3. 효행자 및 그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교육 및 상담제공
4. 효행 장려를 위한 출판·홍보
5. 그 밖에 효행 장려와 관련된 업무

제9조(사업의 평가) 시장은 효행장려·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센터 및 법인·단체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